

제11장 입소자

제128조 (입소정원, 모집방법 및 입소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나주한국요양원의 각 사업별 이용자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시설 :91명
2. 재가시설 :방문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방문간호서비스

②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자
3.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긴급조치대상로서 거주지가 없어져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 할 사람이 없는 자

③모집방법: 방문, 인터넷카페, 전화 문의 등

④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1.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권자·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입소·이용 신청서를 시·군·구장에게 제출한다.(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시·군·구장(읍·면·동 대리접수)→ 접수 및 승인→ 장기요양기관(수급자와 급여계약)
2. 그 외 는 시설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에 직접 신청한다.
3. 입소 시 제출서류는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류, 입소건강진단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제128조의2 (입·퇴소에 관한 사항) ①입·퇴소에 관하여는 <별표

11>에 의한다.

제12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 기간으로 한다.
2. 계약만료 시 입소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②계약의 목적은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등급별 법정부담금액으로 한다.

④급여비용의 청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하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해당년도 기준).

1. 급여비용(본인부담금 20%,경감대상자(당해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0%로 한다.)
2. 비 급여는 식재료비 로 한다.
3. 제2호의 비 급여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인상 할 수 있으며 비급여항목을(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추가 할 수 있다.
4. 위의 급여 및 비급여의 내역에 정하지 않는 것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5.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신원인수인(보증인)의 권리 의무·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제4조(별표10)에 의한다.
- 6.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7.계약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8.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한다.

제130조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경감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2. 입소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비 급여 항목 및 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제1호의 경우 이용료 납입 15일전에 우편 및 문자·유선으로 변경의 내용을 통보한다.
4. 제2호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변경되어 납입하기 15일에서 1개월 이전에 우편 및 문자, 홈페이지, 등으로 통보한다.

제131조 (급여제공의 기본 원칙) ①대상자 중심의 서비스제공

②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③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 제공

④시설급여제공기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제13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신체활동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세면 및 몸단장, 구강위생,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과 이동, 화장실 이용하기

2.시설환경관리 서비스 침상청결, 생활 실 관리(환기, 실내온도, 습도, 소음, 채광,), 세탁물 관리, 치매대상자를 위한 환경 조성

3.간호 및 처치 서비스, 기초건강사정, 투약관리, 호흡기 간호, 피부간호, 영양 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치매간호, 응급 간호, 임종 간호, 감염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및 연계(촉탁의 진료지원, 의료서비스연계), 신체 억제 대 사용

4.재활치료 지원서비스 기능회복훈련(신체기능, 기본동작,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정상기능유지, 협응동작, 근력강화 훈련, 관절가동운동, 통증관리), 작업치료(신체기능, 인지기능, 기능적 동작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 심리안정 및 감각자극훈련, 연하자극훈련)

5.사회복지 서비스사례관리, 이용자 지지체계 구축(의사소통과 상담, 노인상담사례), 외부자원관리(지역사회 개발업무, 후원,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관리(단위 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그램)

6.영양 서비스 영양관리, 급식관리(식단관리, 식재료, 조리), 위생관리(개인위생관리, 식중독 보고)

7.1호~6호 이외의 수급자가 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원할 경우 자부담으로 한다.

제133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서비스의 기준

가. 다른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

다. 긴급한 경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재할 경우는 수급자명, 수급자상태 (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 자, 제재방법, 통지대상자, 통지일시, 통지방법 등을 기록하고 보호자에

게 통지한다.

라.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특별침실의 사용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3.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비용 발생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구체적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간호(조무)사는 매일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혈당 등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력하고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3.촉탁의 관련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다.(월2회 이상 진료)

4.간호(조무)사는 병원처방에 의한 투약의 지도를 한다.

다만, 아침 식전, 응급 시, 취침 전 등의 경우 업무대행자, 사회복지사 등이 간호(조무)사 의 지도를 받아 투약 할 수 있다.

5.1인 배치(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업무자의 공백이 발생할 시에 협력연계의료기관의 의사나 촉탁의 또는 요양원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지도를 받아 간호(조무)사가 간단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6.수급자의 상태변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기관

으로 즉시 이송한다.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7.정기병원 진료 시 수일 전에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협조를 구하고 진료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자와 진료의사에게 제공한다.

8.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종사자가 동행하고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하고 귀원하다.

9.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간호(조무)사가 동행한다. 다만, 응급상황 때, 간호(조무)사 부재 때 에는 직종에 관계 없이 동행할 수 있다.

10.질환의 증상 약화로 인해 10일 이상의 전문적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일 이상의 외박으로 요양원의 입소인원에 영향을 미칠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 및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1.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협의 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34조의2(임종 및 장례)<신설2018.4.1>

①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 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무연고자인 경우

1.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1개월 이내 관할 동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3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①수급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수급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수급자는 시설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무 행정상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 ③시설 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승강기의 이용 시 층간의 이동시엔 직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⑤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소유의 전열기, 전기장판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자제품 및 개인용 냉장고등의 생활실 사용 및 반입을 금지한다.

제13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수급자를 ‘갑’이라하고 시설을 ‘을’이라 한다.)

- ①‘을’의 ‘갑’에 대한 배상 의무
 - 1.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2.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3.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4.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가.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다.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제137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①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 위원회의 운영규정 절차에 따른다.
- ②운영위원의 재적 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③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3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①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용)」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한다.
- ②운영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제8장 회의와 교육 제1절 운영위원회 회의규정”에 의한다.